

의안번호	2201310
의 퇴 인	남인순 의원
회 답 일	2024. 7. 24.
추계번호	24C1366
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제7조(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)	시·도지사(시·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·운영하여야 함 ※(현행) 재량규정
2	안 제11조(사업의 우선위탁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·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음 ※(현행) 시·도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범위: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 등
3	안 제29조(보조금 등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※(현행)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: 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
4	안 제30조의2(시·군·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)	(제1항) 시·군·구의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·군·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·운영할 수 있음 (제3항)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군·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
5	안 제41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	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군·구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7조(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1조(사업의 우선위탁)	
3	안 제29조(보조금 등)	
4	안 제30조의2(시·군·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)	
5	안 제41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	

2. 상세 사유

가. 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(안 제7조), 사업의 우선위탁(안 제11조), 사업 수행 경비 출연 또는 보조(안 제29조)

□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시·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·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, 시·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2024년 7월 현재 17개 시·도 중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16개 시·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

－ 보건복지부는 시·도 사회서비스원에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의 지원 목적으로 개소당 16억 6,700만원 중 일부(서울 30%, 그 외 50%)를 국고보조하고 있으며, 2024년 전국 시·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총 지원 예산은 80억원

○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2024년 8월부터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종료할 예정

－ 서울특별시는 2024년 5월 20일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」를 공포함에 따라 2024년 11월 1일 해당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될 예정이나, 해당 기관이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는 2024년 7월 31일 모두 종료할 예정

○ 개정안 시행 시 경상북도와 서울특별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치·운영해야 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경상북도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될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

○ 보건복지부는 2022년과 2023년에 경상북도의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위한 지원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해당 기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년 연속 불용됨

－ 경상북도 예산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음

○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운영 비효율성과 공적서비스 미흡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2023년 11월부터 해당 기관을 폐지하는 조례가

시행된 상황이므로,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이 의무화되더라도 기존의 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개편될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도 부재

- 서울특별시의회의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(의안번호: 1617)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, 2020년 이후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기관에 대한 운영 비효율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서비스 미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였고, 이에 따라 해당 기관과 서울특별시가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 고비용 저효율 임금체계 개선, 민간 중복사업 중단,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혁신안 보고를 하였으나, 실제 이행되지 않음
- 서울특별시에 따르면, 2024년 8월 중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나, 2024년 7월 현재 향후 대책 등을 논의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은 미정

나. 시·군·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(안 제30조의2) 및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(안 제41조)

- 개정안에 따라 시·군·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·운영 또는 위탁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 필요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시·군·구 단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으므로, 개정안 시행 시 시·군·구가 사회서비스원을 추가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시·군·구의 수와 위탁할 업무의 범위 등을 알 수 없음
 - 안 제30조의2는 시·군·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,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시·군·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